



캐나다의 우유공급 관리제도의 운영

이 수 현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장 농학박사

〈지난호에 이어서〉

나. 가공우유값의 결정

음용우유에서와 같이 가공용 우유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도 가격결정공식이 쓰인다. 그러나 그 공식은 온타리오 뿐만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비용을 대표한다. 이 가격결정 방식에 따라 매년 8월에 목표가격이 결정된다. 가공용 우유값의 결정 방식은 음용 우유값의 결정이 있어 지도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공용 우유값의 결정공식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의 전년도 실제생산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생산비 계산은 세계의 부문 즉, 현금비용, 자본비용, 그리고 노동소득의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자본비용은 농가자산의 금융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쿼타, 그리고 주택과 같이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노동소득에는 우유생산 및 관리에 투입된 가족노동, 고용노동에 대한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가장 효율적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70%의 우유 생산자만이 이 생산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낙농연도의 중간쯤에 이 가공용 우유값은 재검토된다. 그래서 2% 이상의 가격 변동 요인이 있으면 2월 달에 조정이 이루어진다.

목표소득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지지가격을 결정하고 이들 유제품에 대한 최저가격을 결정한다. 다른 유제품은 이들 가격을 기초로하여 그들 제품이 시장에서 갖는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가가 공급하는 우유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우유가격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공용 우유를 공급한 낙농가는 그 우유가 어떠한 유제품의 원료로 쓰였느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우유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 내에서 쓰여진 여러가지의 가공유에 대하여 용도 별로 가중평균된 가격 즉, 조정된 단일가격으로 우유대금을 받게된다. 이 등급화된 가격 결정 체제는 원료우유가 쓰인바에 따라 그 실제적인 가치가 결정된다는 원자재로서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급화된 가격은 OMMB로 하여금 특별히 낮은 가격등급의 우유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가공업체에 대한 OMMB의 정책효과를 인식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버터와 탈지분유 공장은 우유값을 덜 내는데, 그 이유는 가공용 우유를 배정함에 있어 다른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남는 우유에 대하여 그리 배정하기 때문이다. 우유생산과 수요는 주기적으로 불균형이 오는데 이들 버터공장과 탈지분유공장이 OMMB로 하여금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가공용 우유값에 있어서도 음용 우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내외의 이해관계자와 협의의 거치고 또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유가공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방정부는 가공용 우유 생산자에게 우유 100리터 당 6.03불의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은 목표소득의 12.1%에 상당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득도 그만큼 증대되는 것이다.

다. 우유가격 전망

몇해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관리기법이 도입 활용됨에 따라 농장의 생산효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농가가 받는 우유가격은 다른 대다수의 상품에서 보다 그 인상 폭이 낮았다. 농가가 거둔 생산성 향상이 소비자에게 이전된 결과 사실상 우유값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보다 낮았다.

1982년 1월부터 1991년 8월까지 유제품의 목표 소득은 26.0%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지수(CPI ; Consumer Price Index)는 59.3%가 올랐고 CPI중의 식품부문은 54.0%였다. 캐나다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중에서 식품에 지출하는 금액이 다른 서구 사람이나 산업화된 나라의 사람들 보다 낮다.

라. 농장을 떠난 우유의 가격결정

온타리오주에서의 유가공업체나 소매자가 판매하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지 정부가 정하는 규제가격은 아니다. 온타리오의 유가공업체, 우유

배송업체 및 소매업체들은 농가에 지불되는 유대못지 않은 비용을 들여 우유를 보관하기도 하는 경쟁력있는 시장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가격결정체제는 생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농가에게는 생산비를 소매업자와 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경쟁력을 갖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질 좋은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5. 우유운송

농장으로부터 유가공공장으로 우유를 운송하는 것도 OMMB의 주요 책임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OMMB는 단 한대의 우유운송트럭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우유 운송에 관한 한 OMMB와 독립된 106개의 운송회사 사이를 어떻게 잘 협조시키느냐 하는 노력이 OMMB의 우유운송사업 내용이 된다.

OMMB는 우유운송제도가 잘 운용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서로 다른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MMB는 유가공장에 우유운송량을 배정하고, 낙농가들이 부담할 운송비용을 산정한다. OMMB는 우유운송회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고, 각 운송회사에게 집유할 낙농가를 배정해 준다. 온타리오 우유운송협회(OMTA ; Ontario Milk Transport Association)와 우유운송자 거래협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OMMB는 운송회사가 그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지불받을 운송비 산정공식을 결정한다.

낙농가가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유운송회사는 사업운영과 의사결정을 그들 자신이 한다. 모든 운송회사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되는 운송비를 지급받는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순이익이 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어떠한 사업운영에서와 같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OMMB가 설립되기 이전의 시절에는 우유운송체제가 말로 비능률 바로 그것이었다. 운송회사간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같은 운송노선에 이웃해 있는 낙농가에게 서로 다른 회사의 트럭이 집유하려 다투었다. 거리, 시간, 에너지비용은 모두 우유생산자의 비용 증가와 우유운송자의 이익 감소로 결과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집유노선상에 이웃해 있는 낙농가에게는 가능한 한 동일 운송업자가 집유하도록 집유노선을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음용으로 쓰는 우유이든 가공용으로 쓰는 우유이든 간에 한가지 품질 기준만을 적용케 함으로서 집유노선을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보다 더 앞장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이 합리화를 기해 나감으로서 비용이 절감되고 그것은 결국 유대에서 공제될 우유 운송비를 적게 내는 결과가 되었다.

대부분의 우유생산자에게는 이틀에 한번 집유차가 들어간다. 집유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농장마다 정해놓은 집유시간에 맞춰 도착된다. 집유차가 농장에 도착하면 운전자는 집유되는 우유의 양과 우유의 온도를 기록하고, 5분동안 우유저장 탱크의 우유를 교반한 후 그 우유가 위생적이고 냄새가 없으며 집유할 수 있는 우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우유를 검사한다. 그 결과 집유할 수 있는 우유인 것으로 평가되면 집유탱크로 옮겨 실는다. 운전자는 우유성분과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 시료는 겔프에 있는 중앙검사소에서 분석된다. 운전자는 우유평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온타리오주 정부의 농업식품부가 주는 농가우유저장조 우유평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가우유저장탱크는 1,000리터 부터 15,000리터 또는 그 이상에 이르는 것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5,000리터 수준이다. 우유운송탱크는 14,000리터에서 부터 어떤 것은 35,000리터까지도 있다. 트럭 한 대로 농가의 크기에 따라 8개 농가에서 부터 15개 농가의 우유를 집유한다. 어떤 경우에는 탱크트럭이 2일에 1회 이상 들어가는 때도 있는데 연중 8개월 이상에 매일 1,762리터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는 OMMB에 대하여 매일 집유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농가가 부담한다. 집유는 주 7일에 걸쳐 하는데 안식일 휴식으로 집유를 원치않는 농가를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우유운송회사가 쉽게 농가출하 우유를 집유할 수 있도록 OMMB와 온타리오 농업식품부의 낙농검사소는 농장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 지

침에서는 진입로의 폭, 농가 운동장에서의 트럭회전 공간, 착유실의 위치, 우유를 트럭에 옮겨 실는데 필요한 전원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가. 운송비 지불방법

낙농가는 우유 운송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출하되는 우유 100리터 당 일정 요금을 지불한다. 실제 수송 경비는 낙농가 간의 거리, 유업체와의 거리 등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에서는 주 전체를 4개의 우유운송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지불한다. 4개의 운송권역은 남부온타리오, 던러베이지역, 케노라-레이니 리버, 그리고 나머지 북부온타리오이다.

우유운송비는 던러베이지역이 가장 낮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 시장에서 생산자와의 거리가 근접해 있기 때문이며, 다음이 북부온타리오이다. 케노라-레이니 리버 권역이 가장 높은 운송비를 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생산자와의 거리도, 유업체와의 거리도 멀기 때문이다. 운송요금은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유대에서 직접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유가공업체는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FOB가격으로 우유를 공급 받는 것이다. OMMB는 매 6개월마다 권역별 운송요금을 검토하여 그것이 가능한 한 운송 실비에 근접하도록 조정한다.

나. 우유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비 지급방법

우유 운송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공식이 1988년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 공식은 운송업체가 자체운영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차량 기준대수를 정하는데 그 기본을 두고 있다. 고정자산 항목은 기준차량의 기본 숫자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노동 및 유동비용과 같은 여타 항목은 실제비용 또는 평균비용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한다. 우유운송업체의 순수익은 비용의 허용범위 안에서 회사의 비용을 얼마만큼 낮추느냐에 달려있다. OMMB와 온타리오 우유운송업체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운송비 산정공식을 더욱 건전한 운송비 지불과 더욱 경제적인 운송 체제를 확보케 한다.

유동적인 운송비용에 대하여는 200대의 운송차량에 대한 연간 실제비용을 회계조사하여 평균비용을 정하는데 그 대상은 연료, 관리유지, 수리, 타이어 등



이다. 수집하는 우유의 양이라든가 운송거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는 고정비용은 운송업자 간에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지불된다. 예컨대 자동차 면허료, 상각비 등이 그 범주에 들며, 이러한 항목에 대하여는 운영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조사하여 지급 범위를 정한다. 운송비 산정공식은 또한 전화료, 사무실 사용료 따위와 같은 경상비도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용들 외에 운송비에는 각 운송업자들의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 이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부채를 안고 있는 운송업체에게는 빌린 돈의 이자로 충당되고 말 것이다.

다. 운송노선의 합리화

OMMB의 초기 시절에는 우유 운송에 관한 주요 업무라는 것이 운송요금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우유 운송노선 합리화의 요체는 운송효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합리화는 주 내의 모든 지역에서 실행되었다. 우유생산자의 수와 위치가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유운송노선의 관리도 그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노선의 합리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유 운송비용의 상당부분은 운송 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OMMB는 계속하여 운송노선을 개선한다든가 운송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운송비용을 낮추든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합리화의 첫 단계는 군 단위 지도에 낙농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송노선을 따라 위치한 낙농가의 수가 얼마이고, 연간 운송되어져야 할 우유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운송로선, 차고지, 운송용역을 받을 시장을 설정하고, 어느 위치에 운송업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생산자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확정한다. 운송업체 운영에 관한 이와 같은 전반적 사항을 고려한 후 OMMB는 운송업체 별로 적절한 양의 우유가 운송될 수 있도록 낙농가를 배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운송업체와 지역의 우유위원회와 협의한다.

OMMB의 이와 같은 우유운송체제의 조정은 낙농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 OMMB가 판매하는 우유가액에서 우유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9년

에 4.9%였던 것이 1990년에는 4.2%로 줄었다. 운송비 그 자체로는 1979년 대비 13%가 절감됐다. 운송효율을 계속하여 높여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운송비를 이와같은 기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6. 우유의 품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온타리오 우유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낙농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유생산자, 우유운송자, 가공회사, 주 정부 모두가 소비자에게 질 좋은 우유 유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주어진 역할을 다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온타리오 농업식품부의 낙농검사소(Dairy Inspection Branch)는 온타리오주에서의 우유 품질에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고 책임진다. 낙농검사소의 책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우유운송 기사를 농가에서의 저장우유검사기사로 훈련시키고, 면허를 주며 지도 감독하는 일, 둘째, 농가의 우유가 규정상의 우유품질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우유검사소(Central Milk Testing Laboratory)로 하여금 농가로부터의 우유 표본시료를 검사하게 하는 일, 셋째, 유가공업체에서 우유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유 및 크림 품질 검사기사로 훈련시키고 면허를 주며, 지도감독 하는 일, 넷째, 가공 과정에서도 우유의 품질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 지도하는 일 등이다.

우유 질에 대한 검사는 농가로부터 집유를 할 때마다 매번 실시된다. 우유운송차량 기사는 농가의 우유 저장탱크에 들어 있는 우유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인데, 이들이 저장돼 있는 우유가 품질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농가에 저장되어 있는 우유는 적정 온도로 냉각돼 있어야 하고 청결하며 냄새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우유에 대하여 이들은 집유를 거절한다. 마찬가지로 유가공업체에서도 운송차량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우유를 운송해 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유운송차량 기사들은 또한 그들이 집유한 농가의 우유저장탱크에서 그 우유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할 책임을 지고 있다. 채취된 시료는 병에 넣어지고, 그 병에는 농가의 허가번호가 들어있는 특수라벨이 붙여진



다. 이 시료는 농장을 떠나 중앙우유검사소에 이르기 까지 본래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된다.

중앙우유검사소는 이렇게 옮겨져 온 우유시료를 검사하여 박테리아 수, 체세포 수, 유해잔류 물질의 함유여부, 결빙점등을 판정한다. 농가에서 매달 임의로 채취한 시료는 품질을 검사하는데 쓰이는데 그 농장의 우유가 표1의 납유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우유 생산자는 벌과금을 내야 한다.

(표1) 우유품질 위반 벌금기준

대 상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위반	5회위반	6회위반
박테리아(3개월 중 2개월 연속)	1	2	3	4	5	집유중단
체 세포(4개월 중 3개월 연속)	1	2	3	4	5	집유중단
유해잔류물질	6	9	12	집유중단	-	-
결 빙 점	2	4	6	8	집유중단	-
농 가 구비 사항	2	4	8	집유중단	-	-

- 주) 1. 월간 납유량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함.
 2. 위반회수는 1년간의 기록으로 함.
 3. 집유중단의 경우 박테리아 때문일 때는 3~4일에 재개되지만 체세포 때문일 때에는 40일이 경과하여도 재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4. 유해잔류물질은 주로 항생제에 관한 것이고, 농가구비사항은 주로 위생시설에 관한 것임.

우유 생산자는 또한 농장의 구비조건을 갖출 책임을 지고 있다. 낙농검사소 직원이 농장에 와서 구비조건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벌과금이 부과된다.

가. 박테리아수

집유 가능한 A등급의 우유는 박테리아가 우유 ml 당 10만 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숫자를 초과할 경우 그 우유를 생산한 자는 박테리아 과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감시와 도움을 받는다.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중 2개월 연속으로 ml당 박테리아 수가 10만을 넘을 경우 벌과금을 내게 된다.

나. 체세포 수

중앙우유검사소는 또한 채취되어 온 시료를 검사하여 체세포 수를 확인한다. 체세포 수는 젖소의 유방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정상적인 우유에서 체세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우유 생산자는

그가 납유하고 있는 우유에서 4개월 중 연속 3개월 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벌과금을 내야 한다. 그 기준은 우유 ml 당 1991년에 70만이었는데 1995년 8월1일부터는 50만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매년 5만씩 감축)

다. 유해잔류물질

낙농산업에서는 공급되는 우유속에 유해물질이 잔류돼 있느냐의 여부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유해물질 잔류검사는 공급되는 우유로부터 소비 대중에 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극도의 저감도 수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한다. 만약 시료검사를 통해 잔류물질이 확인되면 그 생산자는 벌과금을 내야되고 유해물질이 완전제거될 때까지 집유는 중단된다.

라. 동결점 검사

우유는 농장으로부터 유가공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 상태 그대로이어야 한다. 때문에 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결점 검사를 하는데 이는 물과 우유의 동결점이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하여 우유시료의 동결점이 물의 동결점쪽으로 가까이 있으면 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동결점이 -0.533도 Hortvet에서 -0.525도 Hortvet 사이에 있을 때는 일단 가수를 의심하여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동결점이 -0.524도 Hortvet 또는 그 이상일 때에는 지나치게 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과금을 부과한다.

모든 우유검사(농장 구비조건을 포함함)에서 12개월 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그 생산자의 지금까지의 기록은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 가공업체

유가공업체에서의 우유품질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통제된다. 낙농목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가공업체도 우유법(Milk Act) 과 여타 법령상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위생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유 그 자체는 가공 직전까지 계속하여 냉장되어야 하고, 모든 우유제품의 생산을 위해 우유는 그 가공 과정에서 멸균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다면 원료우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체다치즈의 경우인데, 그 이유는 최소한 60일 이상의 숙성기간 중에 유해 박테리아가 제거되어 안전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멸균과정이



라고 하는 것은 유해 박테리아가 사멸할 수 있는 온도와 시간에서 가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온타리오주의 공중위생법에서는 멸균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공업체들은 또한 농가로부터 공급돼 오는 우유에 유해물질이 잔류되어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가공업체는 트럭에 실려오는 우유에 대하여 이를 가공처리 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 유가공업체로 부터 유해물질이 잔류돼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가 있으면 낙농검사소는 우유 운송과정을 소급해서 그 유해물질이 혼입된 농장을 찾아낸다.

우유 유제품이 상점에 도착되면 대부분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유통기한(best before date)”이 찍힌다. 정상적으로 취급하지만 하면 그 기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그 우유제품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공업체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팔리지않은 제품을 수거한다. 캐나다 낙농국은 캐나다 낙농가들이 운영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낙농제품의 소비촉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낙농국이 소매업자들에게 대하여 진열장 속의 우유와 유제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우유는 쉽게 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생산, 가공,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온타리오주의 이와 관련된 체제와 기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의 종합적인 것이다.

IV. 맺는 말

캐나다에 젓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 1881년이라고 한다. 그후 111년, 오늘날과 같은 낙농관련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세월이 거기에는 있었고, 또한 광활한 국토의 개발이용 수단으로 토지이용형 축산인 낙농업이 맞물림으로서 국가 시책상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캐나다 낙농 발전의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낙농산업 종사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점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준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OMMB경제실의 경제전문가 피터굴드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캐나다의 우유유통체제를 일컬어 ‘공급관리’라고 하

는데 이것은 캐나다 정부의 낙농정책을 종합적으로 함축한 것이며, 기본 골격은 수입규제, 쿼타제,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 결정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발은 가트(GATT)규정 11조 즉, 그 요지를 ‘국내에서 생산조절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급조절 상 불가피할 경우 수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동원하여 낙농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또한 OMMB의 경제전문가이자 홍보담당관인 빌 미첼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르콰이 라운드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가트규정 11조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귀결될지 걱정 안되는 바는 아니나 대응 논리를 정립하면서 캐나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불과 4반세기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낙농 역사로 볼 때 이만한 규모로 발전해 온 것도 경하할 일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의 여건이 보다 한단계 높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낙농관련제도 중에 우리나라의 낙농발전을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은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캐나다 우유공급관리제도의 근본적 흐름은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유제품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물량에 관하여는 이를 더욱 늘려 나가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든지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효율성에 바탕을 둔 생산비에 근거함으로써 보다 절감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유·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급방법에서는 집유비용 절감과 함께 유제품 별로 우유공급가격을 달리 함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 공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모두 생산자 단체인 우유유통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음은 앞에서 소개한 바대로이다. (끝)